KIM & CHANG

# Newszine

October 2015, Issue 3

## UPDATES 법률정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제정

2015년 세법개정안

노사정 위원회, 핵심쟁점 5개항에 대한 합의안 도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시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시행 안내

## CASES 업무사례

- 한앤컴퍼니의 한라비스테온 인수
-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인수
- 현대자동차의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 대한 현물출자
- 금호터미널의 금호고속 인수
- 메디카PEF의 WCCT 전환사채 취득
- 과장된 연비표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방어
- 포스코 아연도강판 담합 사건 관련 판결 선고
- 이지스리테일 제55호 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롯데마트 3개점 매입 및 임대
- 풀무원 신종전환증권 및 신종신주인수권부증권 발행 및 인수 관련 자문
- 롯데쇼핑의 해외사모사채 발행 자문
- 대법원의 장뇌삼 관련 판결
- 퍼시픽라이프재보험㈜ 국내지점의 보험업 예비허가
- 외국법인이 받은 설계 및 도면작성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
- 서울중앙지법, Trade Dress 모방도 부정경쟁행위 해당
- 영화 '7번방의 선물' 배당금 청구 소송 수행
-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두 번째 투자자 중재사건의 한국 정부 대리인으로 선정
- 한국 기업의 일본 통신판매회사 인수 관련 ICC 국제중재 승소

## NEWS 새소식

- 5개 전 분야 국내 선두 로펌으로 선정 - IFLR1000 (2016)
- 11개 분야에서 Outstanding으로 선정 - Asialaw Profiles 2016
- 로펌 규모 세계 71위 - The American Lawyer Magazine's Global 100 (2015)
- 아시아·태평양지역 로펌 브랜드 랭킹 5위 - Asia Pacific Law Firm Brand Index 2015
-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 - China Law & Practice Awards 2015
- 40 Under 40 List로 선정 - Asian Legal Business 2015

금융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지배구조법”)이 2015년 7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5년 7월 31일 공포되었고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지배구조법은 그 동안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존재하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2014년 12월 시행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지배구조법은 특히 증권, 보험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개별 업법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적용대상

국내금융회사 일반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며,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임원의 자격요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 조항이 선별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지배구조법은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지배구조에 있어서 완화된 요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으므로 향후 제정될 시행령이 그 적용 범위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2. 주요내용

-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임원 후보 추천절차 강화**
  사외이사에 대한 결격사유가 확대되었고 적극적 자격요건이 도입되었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를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등 사외이사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의 권한 강화**
  현재 금융업권별로 상이한 사외이사 수를 원칙적으로 3인 이상 및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였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금융회사의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 및 책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마련 및 공시**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 성과평가 및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 지배구조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 구성 및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선임절차 강화**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그 중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감사위원의 선임에 있어서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1인 이상은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선임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위험관리제도 및 보수체계 개선**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적시에 인식, 평가, 감시, 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 등을 심의·의결하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와 연동시키되, 성과보수를 일정기간 이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대주주의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이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된 은행 등을 제외하고,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일정한 기간마다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개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유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된 일부 사항(적격성 요건 중에 횡령, 배임 등의 처벌근거가 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포함 여부, 시정조치 중에 처분명령을 포함할지 여부)은 입법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상환 변호사(shlee@kimchang.com), 이학진 변호사(hakjin.lee@kimchang.com)

조세 일반

# 2015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6일자로 2015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2015년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개정된 세법은 대부분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15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1.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 (법인세법 제13조)

현행 법령에 의하면,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이후 10년 동안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며 결손금이 과세소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과세소득 전액까지 결손금을 공제합니다.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결손금이 과세소득보다 많더라도 과세소득의 80%까지만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과세소득 전액까지 결손금을 공제합니다. 다만, 구조조정 중인 법인(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에 대하여는 신설되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 2.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세무상 인정 제한 규정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현행 법령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하여 특별히 세무상 비용 인정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업무용 승용차(경차, 승합차, 택시는 제외됨)와 관련된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의 비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 비율만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비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업무용에 사용한 비율을 입증하여야 하며 일정 규격 이상의 기업 로고를 부착한 승용차의 경우에는 관련 비용이 전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련 비용은 전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요건, 세무상 비용 인정 비율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부분은 귀속자가 해당 부분을 소득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예를 들어 귀속자가 임직원인 경우에는 상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천세도 발생하게 됩니다.

3.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범위 축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국내에서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과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등의 경우, 해당 용역 제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이러한 사업 중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과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국내법인이나 거주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해당 외국법인이나 거주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4.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56의7조 신설)

현행 법령에 의하면, 외국법인(국내 지점은 제외함)의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소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내국법인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외국법인(국내 지점은 제외함)의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더라도 내국법인이 파견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특정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근로 제공대가의 18.7%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대상이 되는 파견 근로자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5.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축소 (부가가치세법 제53의2조)

현행 법령에 의하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해 구동되는 애플리케이션, 음성·동영상 파일, 소프트웨어 등의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서 국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백우현 (whbaik@kimchang.com), 정병문 (bmjung@kimchang.com), 서재훈 (jaehun.suh@kimchang.com)

인사·노무

# 노사정 위원회, 핵심쟁점 5개항에 대한 합의안 도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 위원회”)는 1년여의 논의 끝에 2015년 9월 15일자로 취업규칙 변경요건, 일반해고의 기준 등 5개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안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노사정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노동계, 경제계, 정부 대표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며 주요 노동정책에 대한 협의 및 대통령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번 합의안에 포함된 5가지 핵심쟁점의 내용은 (1)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정, (2) 일반해고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정, (3) 청년고용 확대노력, (4) 기간제·파견근로자 고용안정 및 규제합리화, (5) 5인 미만 사업장 등 근로시간 적용이 제외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개선제도 마련입니다. 이 중 취업규칙 변경 및 일반해고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정에 노동계가 합의하였다는 점이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의 가이드 라인은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용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 60세 정년의 법제화 및 이에 수반되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해고에 대한 가이드 라인은 징계해고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외에 개인의 성과 부진 등을 이유로 하는 해고가 유효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들에 대한 지침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현재의 엄격한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 합의안은 정부 및 국회에서 관련 법령의 입법 등 후속절차가 완료되어야 실제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지만,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온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 2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이들 사건들에 대하여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가 최근 판결을 선고하였기에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당시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쟁점 | 전원합의체 판단 |
|---|---|---|
| 생산직 | 설·추석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관행에 따라,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 관리직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근로자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함. |

## 1. 생산직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원고들(근로자 측)은 기존의 주장을 변경하여 설·추석상여금 외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분할지급을 구하는 방법 등으로 청구취지를 조정하면서, 원고들의 청구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위험이 없으므로 신의칙 항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장 법률사무소는 회사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다각도의 분석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파기환송심은 원고들의 임의적 청구 일부 포기 및 분할 청구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며 정기상여금과 관련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2. 관리직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원고들은 회사가 원고들이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으므로 원고들의 추가 임금 청구는 신의칙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사무소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일수를 초과해 원고들에게 연차를 부여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보다 많은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신의칙 적용여부와 관련 없이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파기환송심은, 갑을오토텍이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조건보다 이미 유리한 조건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신의칙 적용여부와 상관 없이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임금은 없다는 원칙(이른바 "최소기준의 원칙")에 근거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1) 신의칙에 관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특히 근로자 측이 일부청구포기, 분할청구를 하는 등 변칙적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의칙 항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 처음으로 확인되고, (2) 아울러 최소기준의 원칙의 유효성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김원정 변호사(wjkim@kimchang.com), 정성욱 변호사(sungwook.jung@kimchang.com)

기업법무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난 2015년 7월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여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M&A 활성화에 관한 정부 시책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2013년 12월 4일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방안 및 2014년 3월 6일 발표한 기존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상당 부분 유지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자본시장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5년 7월 23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LP 요건 | • 전문투자자(일부 제외)<br>• 1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br>• 20억 원 이상 투자하는 법인 | • 전문투자자(일부 제외)<br>• 3억 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 GP 임원 또는 운용인력은 1억 원) |
| 영업양수도 방식 투자 | 불허 | 허용 |
| SI투자자의 SPC 참여 | 불허 | 허용 |

한편, 현행법에 따라 이미 GP등록을 완료한 법인이 개정법 시행 이후 새롭게 PEF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법에 따라 새롭게 GP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정법상 강화된 GP등록 요건은 (1) 전문인력(기존 ‘1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개정), (2) 건전한 재무상태(‘자기자본이 차입을 통해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요건 신설), (3) 사회적 신용(‘no sanction’ 요건 신설) 요건이며, 2015년 10월 1일부터 개정법에 따른 GP등록이 가능합니다.

박종구 (jkpark@kimchang.com), 김태오 (teo.kim@kimchang.com)

환경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15년 7월 31일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인과관계 추정 법리, 정보청구권 및 환경책임보험을 도입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한 동법 시행령 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하위법령")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동 하위 법령은 2015년 9월 9일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후 2015년 11월까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5년 12월 공포될 예정입니다.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1) 환경책임보험("보험") 가입대상 시설의 구체화, (2)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액 설정, (3) 보험의무가입 최저보장계약금액의 구체화, (4) 정보청구방법과 제공기간의 구체화, (5)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기간 설정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조항 | 주요 내용 |
|---|---|
| 보험가입대상 시설의 구체화(시행령 제8조 및 별표3) |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 중에서 규모, 종류 등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시설을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로 한정하였음. 이에 따라 금번 시행령에서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아래와 같음<br>•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저장용량 1000㎘이상의 석유류 저장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제조 및 저장시설<br>•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br>• **기타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1종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1종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
|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액 설정(시행령 제4조 및 별표2) | • 가군(고위험군) 2000억 원: 법상 최고한도<br>• 나군(중위험군) 1000억 원<br>• 다군(저위험군) 500억 원<br>• 가군, 나군, 다군 선별 기준은 환경오염사고 사례, 판례, 업종별 피해유형 등을 토대로 환경오염유발시설을 위해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였음. 자세한 적용대상 시설은 시행령(안) 별표2 참조 |
| 보험의무가입 최저보장계약금액의 구체화(시행령 제10조 및 별표4) | • 가군(고위험군) 300억 원<br>• 나군(중위험군) 100억 원<br>• 다군(저위험군) 50억 원 |
| 정보청구방법과 제공기간의 구체화(시행규칙 제5조) | • 정보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청구의 서식·방법을 규정: 정보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해야 함<br>• 위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br>• 사업자가 정보제공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불충분하게 제공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정보 제공 및 열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

| 관련 조항 | 주요 내용 |
|---|---|
| 보험 가입 의무기간 설정<br>(시행규칙 부칙 제2조) | • 사업자는 2016년 6월 30일까지 보험가입 후 환경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보장계약증명서를 해당 시설의 인·허가 기관에 제출해야 함<br>• 보험자는 2016년 6월 30일까지 환경책임보험전산망에 보험가입 내용을 입력하고 인·허가 기관에 통보해야 함 |

위와 같이 보험가입의무기간이 2016년 6월 30일로 정해진바, 기업들은 보험 의무 가입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14년 12월 공포된 법에 규정된 보험 가입의무대상 시설 및 금번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을 통하여 구체화된 보험 가입의무 대상 시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안) |
|---|---|
| 대기 | •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br>• 대기 1종 사업장 |
| 수질 | •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br>• 수질 1종 사업장 |
| 폐기물 | •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
| 건설폐기물 | (해당 없음) |
| 가축분뇨 | (해당 없음) |
| 토양 | • 저장용량 1000㎘이상의 석유류 저장시설<br>•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대상시설<br>• 송유관 시설 |
| 유해화학물질 |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대상시설 |
| 소음진동 | (해당 없음)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 (해당 없음) |
| 해양 | •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br>• 오염물질저장시설<br>• 폐기물저장시설 |

또한, 금번 하위법령에서는 정보청구를 받은 기업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기업은 원칙적으로 10일, 정당한 사유가 있어 1회 연장하는 경우 최대한 20일의 준비 기간 내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관계로, 위 기간 내에 정보를 제공하여 법령을 준수하면서도 영업비밀 유출의 위험이 통제될 수 있도록 환경정보의 관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윤정 (yjlee@kimchang.com), 이주형 (joohyoung.lee@kimchang.com)

방송·통신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개정안")이 2015년 7월 24일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및 법정 손해배상제도 관련 조항 등 일부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및 법정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1.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법정 손해배상 제도 도입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보주체가 입은 실제 피해액을 넘는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위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보주체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 면책될 수 있습니다.

상기 신설 조항은 개정법 시행 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됩니다.

## 2.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 등

개정안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201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 조치 위반에 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책제도 개선권고권 및 이행점검권,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인정보 관련 손해배상 제도와 처벌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준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전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최동식 변호사(dschoi@kimchang.com), 김영준 변호사(youngjoon.kim@kimchang.com)

관세 및 국제통상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시행 안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대량파괴무기 등 전략물자·기술의 수출허가를 규정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수출입고시”)를 개정하여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1. 수출허가 신청자격 명시 (제18조의2)

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신청적격자”)에 대하여 규정을 신설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1) 전략물자 등을 소유한 자로서 수출을 스스로 통제·주관하는 자

(2) 전략물자 등을 소유한 자로서 수출을 스스로 통제하는 외국 소재자로부터, 해당 전략물자 등의 수출을 포괄위임 받은 자

(3) 위탁가공무역 또는 수탁가공무역에 따른 수출을 하는 자

## 2. 개별수출허가 면제대상 확대 (제26조)

(1) 전략물자 중 기술이 아닌 품목을 수출/해외이전하는 경우:
수출허가를 면제받아, 수출자가 수출 후 7일 이내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바세나르체제의 이중용도품목의 경우 수출가액 합계 미화 8000달러 이하인 경우(종전 미화 3000달러 이하에서 상향)
  다만, 동일 구매자에 대한 최종 수출통관일 기준으로 이전 1년간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음.
-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한국으로 재반입하거나 해외현지에서 폐기하는 조건인 경우
- 이중용도품목을 검사, 시험, 보정,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입하거나 해외현지에서 폐기하는 조건인 경우

(2) 전략물자 중 기술을 수출/해외이전하는 경우:
한국 ‘법인과 근로계약 체결한 외국인 임직원’에게 이전하는 경우 수출허가가 면제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26조제3항제3호).

안완기 (wgahn@kimchang.com), 최미경 (mkchoe@kimchang.com), 윤진하 (jinha.yoon@kimchang.com)

기업인수·합병

## 한앤컴퍼니의 한라비스테온 인수

2015년 6월 9일자로, 한앤컴퍼니는 한앤코 오토홀딩스를 통하여 한국타이어 주식회사와 함께 Visteon Corporation이 보유하고 있던 (구)한라비스테온 주식회사(현재 사명 한온시스템 주식회사)의 지분 전부(발행주식 총수의 약 70%)를 인수하는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본건 거래의 경우, 총 주식매매대금이 약 3조 8000억 원에 이르는 거래로서, 국내 시장에서 거래 시점 기준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사모펀드의 buy-out 거래였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가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인 한편, 매도인 역시 미국에서 상장된 회사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각 국가의 회사법 및 증권관련 규제 및 규정들을 동시에 검토 및 고려하여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다양한 고려 요소가 발생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각 국가의 거래관행 등에 대한 조화가 필요하였는바, 법률 자문인의 높은 수준의 독창성과 창의력이 요구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사안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한앤컴퍼니를 대리하여 본건과 관련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인수·합병, 자본시장, 사모투자, 공정거래, 인수금융 및 조세 전문그룹 소속 변호사들이 본건 거래구조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본건 거래와 관련된 제반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에서 전례가 없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대상회사에 대한 실사 및 전 세계 14개 국가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대상회사 자회사에 대한 실사를 위한 현지 법무법인과의 협업, 주식인수계약서의 협상, 한국타이어와의 공동투자구조 협상 및 국내외 대주단과의 인수금융 및 해외 사모펀드 투자자와의 협상, 전 세계 4개 국가에서의 글로벌 기업결합신고 등을 예정된 일정에 맞추어 신속히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본건 거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인수

2015년 6월 24일, KB금융지주는 구본욱 외 7인으로부터 LIG손해보험의 지분 19.47%를 6450억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KB금융지주는 본건 거래를 통해 KB국민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자산이 큰 자회사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비은행부문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건 거래에서는, LIG손해보험 미국지점의 손실 문제로 계약조건 일부를 변경하고, 한국 금융위원회의 자회사 편입 승인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융지주회사 자격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최종 인수까지 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KB금융지주를 대리한 김·장 법률사무소는 거래 구조 수립부터 법률 실사, 협상 및 거래문서 작성 및 거래종결까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 해외 로펌을 리드하여 국내외 정부인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거래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 현대자동차의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 대한 현물출자

2015년 5월 28일 현대자동차가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 대하여 약 1098억 원 상당의 롤링힐스호텔 관련 토지 및 자산을 양도하고,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의 신주를 인수하는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본건 거래는 현대자동차의 비즈니스 구조개선 및 핵심사업 부문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현대자동차는 현물출자를 통해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지분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호텔사업 시너지 효과에 따른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의 자산가치 상승으로 현금매각 이상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건 거래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현대자동차 및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를 각 대리하여, 거래구조 수립, 현물출자계약서 준비,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의 법률이슈 검토,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인가 신청, 기업결합신고, 증자등기 등 본건 거래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금호터미널의 금호고속 인수

2015년 5월 26일, 금호터미널㈜는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해 코에프씨아이비케이에스케이스톤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전문회사로부터 금호고속㈜ 지분 100%를 4150억 원에 인수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의 최종매각제안에 기재된 가격에 우선매수권자가 구속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김·장 법률사무소의 조율을 통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금호터미널은 최종매각제안에 기재된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에 금호고속을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김·장 법률사무소는 금호산업㈜ 및 금호터미널㈜을 대리하여 주식매매계약서 및 부속계약서의 작성 및 협상, 법률실사의 수행, 기업결합신고 및 거래 종결 등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메디카PEF의 WCCT 전환사채 취득

메디카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15년 4월 17일 주식회사 카무르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와 주식회사 메디베이트파트너스 유한회사가 공동 업무집행사원(GP)으로 참여하여 설립되었고, 2015년 5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임상시험수탁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는 WCCT GLOBAL, LLC의 액면 미화 1700만 달러 상당의 전환사채(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의 29.83%로 전환 가능)를 취득하였습니다. 본건 거래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주식회사 카무르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및 메디카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를 대리하여 PEF 설립 및 등록, 계약 체결, 거래에 필요한 제반 신고·보고, 질권 설정, 거래종결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거래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

## 과장된 연비표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방어

최근, 자동차 연비가 과장되어 허위표시가 되었다는 이유로 자동차 소유자들이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여러 건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자동차 소유자들의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들이 속속 선고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최초 판매 시에 연비를 국가기관에 사전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에서 나중에 연비 사후검증을 해 보니, 사전신고한 연비보다 낮은 연비가 측정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자동차 소유자들이 허위 연비표시로 인한 손해(유류비 차액,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본건 재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1) 연비를 사전신고하는 방식은, 자동차 회사가 직접 연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사전신고하는 방식과 자동차 회사가 국가기관에서 지정한 공인된 측정기관에 연비측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사전신고하는 방식이 있는데, 본건은 후자라는 점, (2) 공인된 측정기관의 결과값과 달리 표기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점, (3) 연비 사후검증 때 자동차를 선별하는 주체는 연비 측정기관이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는 점, (4) 연비는 측정방식이 법정되어 있지만 측정시마다 어느 정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는 점, (5) 연비사후검증 결과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 (6) 연비 사후검증 결과 연비가 어느 정도 낮게 측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비자의 구매행위와 인과관계는 없을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입증하였고, 그 결과 자동차 소유자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의 입증을 위하여 김·장 법률사무소는 연비 사전신고 제도와 사후검증 제도에 대한 법령과 실무적인 절차를 분석하고, 연비측정 방식과 측정시의 변수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거쳤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들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유사한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거래

## 포스코 아연도강판 담합 사건 관련 판결 선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5개의 국내 철강사업자들의 아연도강판에 대한 담합을 이유로 포스코에 대하여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7월 22일 포스코의 담합이 인정되지 않거나 처분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그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 철강사업자들이 2006년에 3차례에 걸쳐 각각 (1) 모든 아연도강판 제품의 가격에 원재료인 아연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고 (2) 제품별로 아연할증료를 차등 적용하는 아연할증료 테이블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3) 아연할증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포스코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893억 6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본건 소송에서 포스코는 다른 증거와의 모순점을 지적하여 공정위가 포스코의 담합 참여의 근거로 삼은 다른 회사 직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아연할증료를 다른 경쟁사업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오히려 가격 경쟁을 하였다는 점, 당시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담합에 참여할 경제적 유인이 없다는 점 등 담합과는 배치되는 정황들을 입증함으로써 다른 사업자들과 사이의 담합이 인정되지 않거나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포스코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부동산

## 이지스리테일 제55호 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롯데마트 3개점 매입 및 임대

외국계 펀드가 투자한 이지스리테일 제55호 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REF LLC)는, 2015년 7월 13일 KTB칸피던스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9호로부터 인천시 중구 항동,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및 제주시 노형동에 각각 위치한 롯데마트 3개점을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5년 7월 31일 매입거래 종결과 함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위 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매매거래와 동시에 기존 임차인인 롯데쇼핑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부동산투자유한회사(REF LLC)의 설립, 매매 및 임대차를 위한 법률실사,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및 대출계약의 협상 및 체결 등 일련의 거래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특히 다수 부동산의 동시 취득 및 임대차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고려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거래 완수에 기여하였습니다.

증권

## 풀무원 신종전환증권 및 신종신주인수권부증권 발행 및 인수 관련 자문

주식회사 풀무원은 2015년 8월 6일 총액 300억 원 규모의 무보증 후순위 신종전환증권(30년 만기, 발행인 선택에 따라 만기연장)과 400억 원 규모의 무보증 후순위 신종신주인수권부증권(30년 만기, 발행인 선택에 따라 만기연장)을 사모 발행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신종전환증권 및 신종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인수와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 및 자본시장법, 상법 등 관련 법률상 규제 저촉 가능성을 검토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특히 신종전환증권의 경우 최초 인수인과 신탁회사, 수익자 간의 증권신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관련 계약서 작성, 특약에 따른 수익권의 구체적인 지급조건, 신탁기간 및 신탁보수 등 인수 후 과정에서 제기되는 계약관계 설정과 이에 따라 제기되는 법률상 이슈 해결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롯데쇼핑의 해외사모사채 발행 자문

롯데쇼핑은 2015년 8월 17일 총액 미화 1억 달러 규모의 2회차 해외사모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2014년 말에 이루어진 1차 발행에 관하여 성공적으로 자문한 것에 이어, 본건 발행에 관하여 관련 계약서 검토 업무를 비롯하여,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상 규제 저촉 가능성, 해외사모사채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 절차, 특히 이자지급 조건, 중도상환조건, 추가보장약정 등 발행 과정에서 제기된 법률상 이슈 해결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보험

## 대법원의 장뇌삼 관련 판결

대법원은 2015년 7월 9일 원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이 피고(피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잔존물회수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 소송(소가 79억 5293만 6904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당해 사안은 장뇌삼을 재배 및 판매하는 사업("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는 보험계약자가 이 사건 사업의 목적물인 장뇌삼의 종자 및 종묘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메리츠화재와 체결한 잔존물회수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보험 약관상 규정된 "보험사고"의 실제 발생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이 사건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관련 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사업비, 종묘 및 종자 매입대금의 감액, 가공공장의 설립 포기 등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회사에 제출한 계획과 관련한 위험의 증가나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고 '종묘 및 종자 매출대금의 사용 계획을 변경하거나 지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고 서면 동의를 요청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보험금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김·장 법률사무소는 1심에서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피고 메리츠화재를 대리하여 변론을 수행함으로써 보험금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퍼시픽라이프재보험㈜ 국내지점의 보험업 예비허가

금융위원회는 2015년 9월 2일, (가칭)퍼시픽라이프재보험㈜ 국내지점의 재보험 사업 영위를 위한 보험업 예비허가 신청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예비허가 하였습니다.

이번 퍼시픽라이프재보험㈜의 보험업 예비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김·장 법률사무소는 보험업 허가요건에 대한 자문,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험업 예비허가 신청 업무 등 본건 예비허가 신청에 관한 주요한 법률자문 업무를 제공하였습니다.

조세 일반

# 외국법인이 받은 설계 및 도면작성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본 사안에서, 독일법인인 원고는 국내 제철회사에 코크(Coke)를 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 설비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설비 대금, 엔지니어링 용역 대금, 감리용역 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수령하였는데, 국내 제철회사는 이 중 엔지니어링 용역 대금을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서 규정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습니다. 엔지니어링 용역 대금은 원고가 플랜트 설비를 설계하고 그 도면을 작성하여 국내 제철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였으며 이러한 설계 및 도면작성은 독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용료 소득의 경우에는 한국에 과세권이 있으나, 국외에서 제공되는 인적용역 소득의 경우에는 한국에 과세권이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아래의 이유로 인해 엔지니어링 용역 대금은 인적용역의 대가이므로 한-독 조세조약 제7조에 의해 국내 원천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원고와 국내 제철회사간 계약의 주된 목적은 플랜트 설비를 공급하는 것이고 설계 및 도면작성 용역은 플랜트 설비를 공급하는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임
- 원고가 제공한 설계 및 도면작성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한 지식이나 기능으로 수행할 수 없는 수준의 용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계약상의 비밀보호 조항은 일반적인 용역 계약 또는 판매계약에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내용임
- 설계 및 도면작성이 2년 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음
- 설계 및 도면작성 용역의 대가는 대부분 인건비로 보이며 인적용역 대가로 보기에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설계 및 도면작성 용역의 이행과 결과를 보증하고 있음
- 설계 도면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노하우가 국내 제철회사에 공개 또는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인적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임

상기 대법원 판결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복잡한 플랜트 설비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설계 및 도면작성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첫 사례이며, 동 판결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기계장치, 자동차부품 등의 공급과 같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원고를 대리하여 조세조약 및 국내 세법, OECD 규정 등에 따른 외국법인의 소득구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및 검토를 바탕으로 대법원을 포함한 각 심급별 법원으로부터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식재산권

# 서울중앙지법, Trade Dress 모방도 부정경쟁행위 해당

작년 말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을 최초로 적용한 소프트리 사건 판결이 나온 이후, 최근 같은 법원 민사 12부도 '서울연인 단팥빵'사건에서 브랜드 로고, 외부 간판, 매장 배치 및 내부 인테리어 등 소위 "trade dress"에 대해 위 (차)목 조항을 적용한 판결을 선고하여 trade dress 무단모방에 경종을 울렸습니다(2015. 7. 10. 선고 2014가합 529490 판결).

즉석 프리미엄 단팥빵 전문점인 '서울연인 단팥빵' 인기몰이를 하던 중에 '서울연인 단팥빵'의 제빵사가 퇴사하여 매장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는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컨셉트(concept)의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연인 단팥빵'은 유사 매장의 출현으로 인한 매출하락과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에 지장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퇴사한 제빵사("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에 근거하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 원고 | 피고 |
|---|---|---|
| 로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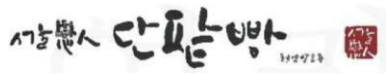 | |
| 외부간판 | | |
| 매장배치 및 디자인 | | |

재판부는 원고 매장의 브랜드 로고, 외부 간판, 매장 배치 및 내부 인테리어 등은 기존 제과점과의 차별화를 위해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만든 성과물인데, 피고는 이와 거의 동일한 표장 등을 사용하여 매장을 개장·운영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원고의 고객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trade dress 모방행위를 위 (차)목 조항에 의해 규제하였다는 점 외에도,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손해 배상을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trade dress의 모방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를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재판부는 모방행위 전체 기간의 피고 매출액에 원고인 '서울연인 단팥빵'의 이익률을 곱한 금액 전부를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방송·통신

# 영화 '7번방의 선물' 배당금 청구 소송 수행

최근 미디어·콘텐츠 및 관련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급성장과 이에 따른 각 분야의 전문화 및 세분화가 일어나는 동시에 융합 산업 역시 새롭게 창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아가 이와 같이 시시각각으로 다변화 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그에 따른 새로운 법률 이슈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김·장 법률사무소는 전문화된 신규 사업의 법률 수요에 맞추어 전례 없는 사례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관련 업무 전반에 전문성을 두루 갖춘 변호사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방송·통신 전문그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최근 방송·통신 전문그룹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대표적인 업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8월경 종합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씨엘엔터테인먼트는 다른 경쟁제작사인 화인웍스를 상대로 영화화 '7번방의 선물'을 공동 제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영화로 벌어들인 수익금의 절반을 배당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당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씨엘엔터테인먼트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상당한 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본건 소송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항소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 화인웍스를 대리하여,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영화제작업계의 현실, 영화 크레딧과 관련된 영화계의 관행, 원고 주장의 모순점 등 엔터테인먼트 팀에서 가지고 있는 해당 산업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이해를 통하여 각종 증거 및 심도 깊은 분석과 함께 재판부에 주장함으로써 본건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을 1심과는 다르게 전환시킬 수 있었고, 그 결과 1심 판결 금액에 비하여 대폭 낮은 금액으로 양 당사자가 신속히 합의하는 것에 큰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김·장 법률사무소는 그 이후 발생하는 각종 집행문제, 세무 관계에 이르는 폭 넓은 조언을 통하여 화인웍스의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국제 중재·소송

##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두 번째 투자자 중재사건의 한국 정부 대리인으로 선정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소송 전문그룹은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의 네덜란드 자회사인 Hanocal Holding 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투자자 중재사건에서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해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투자자 중재사건입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소송 전문그룹은 한국 정부의 주도적 대리인(lead counsel)으로서 위 중재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투자자 중재사건 수행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Debevoise and Plimpton LLP을 공동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투자자 중재에 관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자문 활동을 해온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소송 전문그룹은 위 중재사건에서 한국 정부 대리인으로 선정되면서 국제분쟁 및 조세 분야에서 국내 선두 로펌으로서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해외 분쟁에 있어서 축적된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 한국 기업의 일본 통신판매회사 인수 관련 ICC 국제중재 승소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소송 전문그룹은 한국 기업을 대리하여, 기업 인수·합병 관련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국제중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중재판정부는 각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 국적의 유명 중재인 3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준거법은 일본법, 중재지는 싱가포르였습니다.

본건은 한국 기업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일본 회사를 인수할 목적으로 체결한 주식양수도 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동 한국 기업과 주식양도인이 체결한 주식양수도 계약에서는 이전 대상 일부 주식의 가격 결정 방법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주식양도인은 주식양수인인 한국 기업이 계산한 주식 가격이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는 한국 기업이 계산한 주식 가격이 정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동시에, 주식양도인의 주식양수도 계약상 진술 및 보장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그에 관한 25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ICC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4일에 걸쳐 진행된 심리기일에서, 저희 국제중재·소송 전문그룹은 주식양도인의 주식 가격 계산방식이 부당하다는 점과 진술 및 보장 위반으로 인하여 저희 의뢰인이 입은 손해액을 각종 증거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중재판정부는 주식양도인이 주장한 주식 가격의 상당 부분을 감액하고, 약 25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저희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 주식양수도 계약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주식 인수가격 결정에 관한 분쟁으로, 이러한 유형의 사건 수행에는 당해 거래의 배경, 구조 및 내용에 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이 요구되었고, 특히 계약의 준거법이 일본법이었음에도 저희 국제중재·소송 전문그룹이 일본 로펌의 제한적인 지원만을 받고 승소판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수상소식

# 5개 전 분야 국내 선두 로펌으로 선정 - IFLR1000 (2016)

세계적인 금융 미디어 Euromoney가 발행하는 글로벌 로펌 디렉토리 'IFLR1000' 2016년 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5개 전 분야의 국내 선두로펌(Tier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12년 연속으로 전 분야에서 선두 로펌으로 선정되었으며, 11명의 변호사들이 각 분야별 Leading Lawyer로, 2명의 변호사가 Rising Star로 소개되었습니다.

세부 선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Firm Rankings (Tier 1)**

- Banking & Finance
- Capital Markets
- Competition
- M&A
- Restructuring & Insolvency

**Leading Lawyers**

정계성, 정경택, 허익렬, 박수만, 임치용, 정진영, 박종구, 조영균, 윤희선, 고창현, 신창희

**Rising Stars**

김철만, 정명재

## 11개 분야에서 Outstanding으로 선정 - Asialaw Profiles (2016)

글로벌 금융 전문 미디어 Euromoney 계열의 법률 잡지사 Asia Law & Practice가 최근 발행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시장 평가지 'Asialaw Profiles 2016'를 발행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11개 분야에서 Outstanding, 4개 분야에서 Highly recommended, 3개 분야에서 Recommended로 선정되었으며, 16명의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Recommended individuals로 소개되었습니다.

세부 선정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Outstanding**

- Banking & Finance
- Capital Markets
- Competition & Antitrust
- Construction & Real Estate
- Corporate/M&A
- Dispute Resolution
- Insurance
- Intellectual Property
- Labour & Employment
- Private Equity
- Restructuring & Insolvency

**Highly recommended**

- IT, Telco & Media
- Project Finance
- Shipping, Maritime & Aviation
- Tax

**Recommended**

- Energy & Natural Resources
-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 Investment Funds

**Recommended Individuals**

정계성, 정경택, 양영준, 백우현, 최동식, 노영재, 정진영, 정병문, 박종구, 윤희선, 허영만, 박은영, 정명재, 김진오, 이호인, 서덕일

## 로펌 규모 세계 71위 - The American Lawyer Magazine's Global 100 (2015)

미국 유명 법률월간지 American Lawyer Magazine이 2015년 10월호에서 발표한 'Global 100(전세계 100대 로펌 랭킹)' 특집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2014년도에 이어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세계 100대 로펌 중 하나로 랭크 되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Lawyer 규모 기준으로 선정한 'Most Lawyers' 분야에서 71위, office 소재 국가 개수 기준으로 선정한 'Most Global' 분야에서 99위를 차지하였습니다.

'Global 100'은 American Lawyer Magazine이 매년 발행하는 랭킹 특집으로, 전세계 로펌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결과가 발표됩니다. 올해 특집에서는 most revenue / most lawyers(full-time lawyer 규모) / most profits per partner / Most global(most revenue 차트 and/or most lawyer 차트에 랭크된 로펌의 office 소재 국가 개수)의 기준으로 각각 전세계 1위~100위 로펌이 발표되었습니다.

## 아시아·태평양지역 로펌 브랜드 랭킹 5위 - Asia Pacific Law Firm Brand Index 2015

영국법률시장 조사기관 Acritas가 발표한 'Asia Pacific Law Firm Brand Index 2015'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아시아·태평양지역 상위 20개 로펌 순위에서 5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세계 각국에 오피스를 두고 업무를 제공하는 글로벌 로펌을 제외한 지역 로펌 중에서 1위를 기록하였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내 로펌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번 순위는 미국, 영국, 중국 등을 포함한 55개국에서 활동하는 대기업 사내변호사 363명을 대상으로 로펌의 인지도, 선호도, 기업합병과 다국적 거래 소송의 수행능력 등을 설문조사 한 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20개 로펌 순위를 발표하였습니다.

##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 - China Law & Practice Awards 2015

김·장 법률사무소가 'China Law & Practice Awards 2015'에서 5년 연속으로 올해의 한국 로펌상(Korea Law Firm of the Year)을 수상하였습니다.

China Law & Practice Awards는 세계적인 법률 미디어 그룹인 ALM 계열의 중국법률 월간지 China Law & Practice가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각 로펌의 제출자료와 사내 변호사와의 인터뷰 등 독자적인 조사를 통해 매년 혁신적인 딜 및 우수 로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중국 전문그룹은 분야별로 특화된 중국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업종별 경험과 중국 내 전문 집단과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으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과 한국에 진출하는 중국 기업들에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40 Under 40 List로 선정 - Asian Legal Business 2015

김·장 법률사무소의 전기홍, 강한철, 이영민 변호사가 ALB(Asian Legal Business)가 2015년 9월호 특집으로 발표한 '40 Under 40 List'에 선정되었습니다.

'ALB 40 Under 40 List' 는 아시아 지역(단, 중국,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의 40세 미만 변호사를 대상으로 업무의 우수성과 복합성, 경력을 조사하고 클라이언트 및 선배 변호사의 추천을 받아 주목할 만한 40인을 선정한 특집입니다. 본 특집에서 저희 사무소는 국내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구성원들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무소 동정

## 국제중재 세미나 발표

김·장 법률사무소의 정교화 변호사가 '국제중재 관련 최근 주요이슈와 기업 대응전략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본 포럼은 8월 28일 서울국제중재센터와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의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정 변호사는 '국제계약 관련 최근 분쟁사례와 중재제도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 국제금융법연구회 세미나 발표

김·장 법률사무소의 정성구 변호사가 '국제금융법연구회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8월 14일 국제금융법연구회가 주최한 본 세미나에서, 정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의 국제적 적용범위와 국제증권거래'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 '예비법조인과의 대화 - 소통과 교류' 프로그램 참여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옥, 홍준호, 배현태 변호사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예비 법조인과의 대화 - 소통과 교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7월 24일 한국법학원의 주최로 열렸으며, 멘토 역할을 맡은 변호사들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법조 윤리 및 법조인으로서의 인생관 등 다양한 방면에서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 CISO포럼 강연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진환 변호사가 '2015년 8월 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포럼'에 강연자로 참여하였습니다.

8월 25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 주최로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본 포럼에 공공기관, 기업, 학계 등, 각 분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들 50여명이 참석해 개인정보 위·수탁자의 법적 책임과 스마트카 해킹 위협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 위·수탁 법리와 각종 유의사항'을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KIM & CHANG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9 (우) 03170
전화: 02-3703-1114 팩스: 02-737-9091/9092 이메일: lawkim@kimchang.com www.kimchang.com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저희 사무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치나 행위에 앞서서는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은 출처와 저자(KIM & CHANG)를 밝히고 내용을 임의 편집하지 않는 경우, 개인적인 용도에 한하여 전재하거나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정보 전달 서비스의 수신인을 추가하고자 하시면 newsletter@kimchang.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